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안내

본 매뉴얼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직원,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재단의 경영활동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목 차

| | | |
|-----|-----------------------|---|
| I | 인권 및 인권경영 | 1 |
| II | 인권침해 | 2 |
| III | 인권침해 구제절차 | 4 |
| ※ | [별지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 7 |

인권 및 인권경영

1. 인권이란?

- 아래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인권의 특성

- 천부성 :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권리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 보편성 : 인종, 성별, 지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
- 양도불가성 : 인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
- 불가분성 : 인권은 포괄적·통합적인 하나의 권리로 세부적인 분류나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
- 상호의존성 :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도 향유 및 충족되어야 함

3. 인권경영의 개념

- 정의 :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
- 적용범위
 - 임직원 :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 법인(공법인·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재단의 경영활동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

1. 인권침해의 정의

-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 인권침해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
 - 차별행위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것

2. 인권침해의 유형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국가·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III

인권침해 구제절차

1. 구제절차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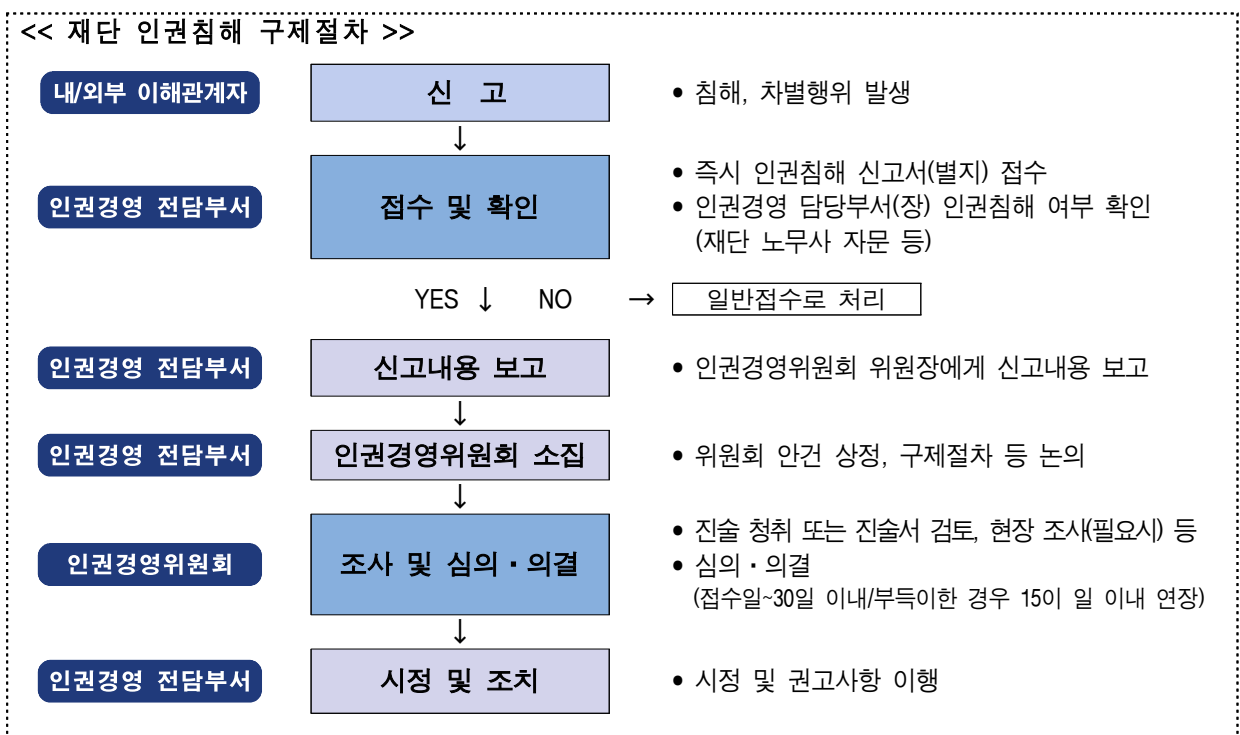
-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누구든지 외부기관 또는 내부(대표이사,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2. 구제절차의 종류

- 내부 구제절차
 - 재단 대표이사 또는 인권경영담당자(경영지원팀장)에게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 처리 가능
-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3. 구제절차 프로세스

※ 본 매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1 인권침해 신고

- 신고인 : 피해자 또는 제3자(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
 - 신고에 따라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가능
- *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 구 분 | 신고방법 | 비 고 |
|-------|--|---|
| 방문접수 |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경영기획실(경영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
| 우편발송 | ·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참고) 작성 후 아래 주소로 발송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경영지원팀 인권경영담당자 앞 | |
| 전 화 | · 051-923-6802로 인권침해 신고 | |
| 팩 스 | · 051-711-6826으로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참고) 전송 | |
| 이 메 일 | · fog2nd@bfic.kr로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참고) 전송 | |
| 홈페이지 | · 재단 홈페이지(www.bfic.kr) → '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24년 11월부터 이용 가능 (홈페이지 개편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 |

2 인권침해사건 신고 접수 및 확인

- 인권침해사건 접수대장 등재(인권경영 담당자)
- 접수대장 등재 후, 인권침해 여부 확인(재단 노무사 자문 등)

| |
|---|
| ※ 각하할 수 있는 사건(재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25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신고한 경우. 단,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동일 신고자가 다시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7)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및 안건 상정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
- 신고내용을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구제절차 등 논의

④ 인권경영위원회 조사 및 심의·의결

-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 1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에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결정사항을 즉시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가능

⑤ 시정 및 조치

-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대표이사가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